

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공고 안내

- 아너스 웰가 진주 아파트 기관주천 특별공급 -

1. 공급개요(입주자 모집공고)

- 공급 위치 :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
- 공급 일정 : [입주자 모집공고] '24.5.30.(목) → [청약홈 청약신청] '24.6.10.(월)
※ 분양일정 및 공급내역은 인허가 및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추천 배정 세대수 : 10세대(예비 50세대)

구분	주택 유형		계
	84A	84B	
추천(예비)	5(25)	5(25)	10(50)

2. 대상요건

-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, 「중소기업기본법」*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- * 제외업종 : ①일반유통 주점업 ②무도유통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
-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(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) 이상인 자
-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([대표자 및 법인 임원* 제외](#))
 - * 다만, ①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)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(급여수령)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
-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
 - *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,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
- 경상남도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자이며, 지역 · 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(종합저축, 청약저축)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(시행사 안내문 참고)

3. 신청 안내

- 신청기간 : '24.5.21.(화) ~ '24.5.28.(화) 18:00까지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 - * 접수 방법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(<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>)
→ 알림마당 →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→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
 - ※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
- 신청서류 : [참고] 및 신청 홈페이지 참조(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)
- 신청취하 :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(18시까지)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취하, 취하 번복은 불가함
- 추천자 선정 :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
- 추천자 발표 : '24.6.3.(월), 추천자 및 예비자에 한하여 문자 안내
 - ※ 추천점수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공지
 - ※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, **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**

4. 유의사항

- 본 공고는 「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천함
- 신청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 불가, 가점 항목 미선택 및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 불가(특별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한을 반드시 준수)
 - ※ 가점항목 및 제출서류, 내용, 기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 요망
- 청약자격 요건은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하며,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 사유에 따른 미청약시 감점사유에 해당함
 - ※ 무주택, 청약조건(청약예금 등), 분양가, 분양일정 등 관련사항은 시행사에 문의

-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- 중소기업 재직여부 및 기업규모 판단 불가능시 대상요건 및 재직기간 점수 불인정
 - ※ 사업자등록번호는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을 참고하여 기재(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)
-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,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'무주택 세대구성원'이 아닌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
- 신청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'청약자격 확인 - 주택소유 확인'을 통해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
 - * 무주택 판단기준 및 청약제도 제반 사항 문의 : 국토부 민원 콜센터(1599-0001)
 - ** 제출서류가 아닌 확인사항임
- 특별공급 추천시 시행사로 추천서를 직접 발송하므로 개별 추천서를 발행하지 않음
- 주민등록법령 위반,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주택소유 등 부적격 사실이 판명될 경우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추천 취소
- 특별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일에 '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'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(미신청시 추천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불가)
- 기타 세부사항은 「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71호(2023.1.1.시행))」, 운영매뉴얼,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참고

※ 문의처

기관추천	055-268-2557	청약, 무주택 요건	1644-7445, 1599-0001
시행사	055-757-1004	시스템오류	1661-7616

- ◆ 서류는 신청기간 내 발급분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 대상자 요건 확인 등이 불가하여 신청 제외될 수 있음
※ 단, 법인등기부등본(3개월 내), 사업자등록증은 발급기간 예외

□ 기본 제출서류

1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
2. 주택우선공급 서약서 1부
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([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] 포함)
4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(개인용)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각 1부
*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: www.4insure.or.kr
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中 택 1
*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,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 발급 가능
☞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
(내역에 없을 시 근무경력 불인정)
6. 주민등록등본 1부(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)
*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,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
7. 사업자등록증명 1부
8. 중소기업확인서

※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는 경우

- 개인사업자 :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법인사업자 :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조정후수입금액 명세서, 최근 결산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, 합병분할시 전후 증빙자료

9. 법인등기부등본 1부(말소사항 포함, 임원에 관한 사항 포함)

10. 가족관계증명서 1부(**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**)

11. 추천(확인) 신청서 1부(별지1 또는 별지2)

가점 서류

1. 제조소기업 재직근로자 : 현직장의 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, 업종 : 제조업) 또는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(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)

2. 뿌리산업종사자 : 공장등록증명서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, 뿌리 기술평가확인서,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 중 택 1

* 뿌리산업의 범위 확인 :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内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 → → 뿌리산업의 범위(<https://www.root-tech.org/certification/guide02.php>)

*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참고

3. 연구전담요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: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(연구 개발인력 현황 포함) 또는 연구전담부서인증서(연구개발인력 현황 포함) 1부

*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

4. 우수숙련기술자 : 「숙련기술장려법」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증서 또는 숙련기술자전수자 증서, 우수숙련기술자증서 中 택1

5. 성과공제기금* 5년 만기자 :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공제가입증명서 (또는 만기증서), 납부확인서 각 1부

* 성과공제기금 : 내일채움공제(중기부)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(중기부)

6.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: 자격증 사본 또는 확인서

* Q-Net 발급 가능하며, 화면 캡처는 인정하지 않음

7. 수상경력 : 개인자격으로 수상한 표창장 또는 상장 사본 1부(상패 등은 사진 사본으로 제출)

8. 미성년 자녀(만 19세 미만) :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임신확인증 1부
(태아의 경우)
9. 주택건설지역 재직 : 주택건설지역 소재 또는 주택의 건설위치에
서 반경 6km 이내 재직
10. 무주택기간 : 지방세 미과세증명서(세대구성원 전원, 15년간 전국단위)
혼인관계증명서 1부(만 30세 이전 혼인 신고시)

※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발급 방법

- 건물등기부등본 : 무인발급기, 등기소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
- 건축물관리대장 : 구청, 동 주민센터, 무인발급기, 정부24 홈페이지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: 구청,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

- *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(주택)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
추가 제출(매각일자 확용)
- *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온라인
신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정보와 무주택기간을 정확히 입력
- **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(주택)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
추가 제출(매각일자 확인용)

□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증빙자료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」)

- (제1호)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,
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,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 여부 확인서류
 - (제2호) 국토부 '씨리얼'*에서 면의 도시지역 여부 확인하고 건축물
대장, 신청자의 초본, 기본증명서
- * 씨리얼 홈페이지 : seereal.lh.or.kr
- (제3호)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업종이 '주택판매'
또는 '분양' 목적으로 기입되어야 하고, 분양을 완료(소유권 이전)
결과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필요
 - (제4호) 현재 받아야 하는 서류는 별도로 정리되지 않음
 - (제5호) 건축물관리대장(면적), 분양계약서(전용면적)

- (제7호) 폐가 사진, 공과금 증빙(물, 수도, 전기 등 사용 내역 없어야 함), 멸실신고에 따른 멸실등기
- (제8호) 신청자 본인이 질의하고 지자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
 - * 건축물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
- (제10호)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 형별 경쟁률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 제출